○○고 계약제교원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 [1심]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명
판결선고일	[1심]2024. 1. 10. 원고일부승	비 고	

사건개요

❍ 원고 ○○○은 이 사건 당시 인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고 ☆☆☆은 위 학교의 계약제 교원으로 원고의 담임교사였던 자임. 2021. 4. 7. 오후 4:20경 종례시간에 원고의 얼굴 3대와 허리를 때려 원고가 넘어지자 구두를 신은채 발로 얼굴을 밟고 걷어참. 이 사건으로 원고는 2021. 4. 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 ☆☆☆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송치됨. 가해교사의 폭행으로 원고는 이명증상 및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가해교사는 오히려 원고를 폭행죄로 고소하며 같은 반 학생들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노력하며 원고를 합의금을 얻기 위해 교사에게 폭행을 유도하는 부도덕한 학생으로 매도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였고, 가해교사에게 동조한 학생들에 의해 원고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음. 사건 이후 원고 측의 요청에도 학교는 교원부족 등을 이유로 가해교사와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2학년 때에도 담임교사는 아니나, 전공수업을 계속 가르치고 있음. 피고 ☆☆☆은 교사로서 정상적인 훈육을 넘어선 명백하고 위법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저질렀고,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가해교사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7. 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 피고 ☆☆☆이 원고에게 한 행동은 그 경위, 체벌을 가한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피고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 ☆☆☆이 한동안 수업을 담당하여 원고와 피고 ☆☆☆이 마주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지속적인 이명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고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 ☆☆☆이 징계처분(주의)과 보호처분결정(재발방지교육 40시간)을 받고 퇴직한 점, 피고 인천광역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학교가 사고 직후 신속한 신고처리, 담임교체, 학부모 및 학생 상담, 대안학교 위탁교육 추진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함.